

서울특별시 만(滿) 나이 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578호

나. 발 의 자 : 옥재은 의원(찬성자 55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4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03일

2. 제안이유

- 그동안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 를 사용하고 있고,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‘연 나이’ 를 사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7일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 을 일부 개정하면서, 나이는 ‘만 나이’ 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음.
-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“만 ○○세” 를 “○○세” 로

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“만 ○○세” 로 규정하던 것을 “○○세” 로 변경함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조례안은 「민법」 과 「행정기본법」 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입법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나.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

-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‘만 나이’ 가 연령 계산 방식의 기준이었으나, 일상생활에서는 ‘세는 나이’ 가 사용되고, 「병역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‘연 나이’ 가 각각 혼용되어 왔음.

<나이 계산 방식 및 사례(1960.4.25.생)>

구분	계산법	내용	2023. 4. 25. 기준	
			이전	이후
세는 나이	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(태어날 때 1살, 새해마다 +1살)	한국식 나이 계산법	64세	64세

만 나이	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(태어날 때 0살, 생일마다 +1살)	국제적 통용기준	62세	63세
연 나이	현재 연도 - 출생 연도 (생일과 무관) 해당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해 동일 기준 적용	- 「청소년보호법」 - 「병역법」 - 시험 응시 나이 - 법 집행의 효율성 - 행정편의	63세	63세

-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각각 달라,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,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‘만 나이’ 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「민법」 과 「행정기본법」 을 개정(2022. 12. 27.)함(2023.6.28. 시행).

< 「민법」 과 「행정기본법」 의 개정 전후 비교 >

「민법」		「행정기본법」	
개정 전	개정 후	개정 전	개정 후
제158조(연령의 계산점)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	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 하고, 연수(年數)로 표 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 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	<신 설>	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-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(滿) 나이로 일괄정비하여 법률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.
- 다만, 조례안에서 일부 누락된 정비대상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·보완할 필요가 있음.

<수정의견>

조례안	수정의견
제16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1항제9호 중 “만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	제16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----- <u>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“만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</u>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소연	02-2180-8065